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73호 2020. 12. 24.(목)

선 람	기 관 의 장

조 례

- 예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예천군 조례 제2419호)
- 예천군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예천군 조례 제2420호)

규 칙

-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예천군 규칙 제1284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19호

예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예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예천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3.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4. 지역 축제 및 관광·문화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5.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
6.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예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
 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군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 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업무는 홍보소통담당이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군정 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의견을 갖춰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예천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예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예천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홍보대사의 임무(제2조)

-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 지역 축제 및 관광·문화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

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제3조)

- 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부합되는 각 분야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
-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
- 그 밖에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 가능

다.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제7조)

-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무 수행 시 의전을 갖춰 예우
- 업무수행 활동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지급

예천군의회에서 의결된 예천군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조례 제2420호

예천군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소비자들이 우선 구매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생산품”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중소기업의 생산제품이나 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농수축산식품을 말한다.

2. “지역생산업체”란 제1호의 지역생산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기관·단체 등”이란 제8조 각 호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 방안
2.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생산품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직거래 활성화 지원)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
2.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포상
3.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유관기관 및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제7조(소비제품 실태조사) 군수는 기관·단체 등이 소비하는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구매협조 요청)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소비제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생산물로 대체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예천군 관내 지방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3. 「예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 연구소 또는 공장 등을 신·증설하는 사업체
4.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천군에서 교부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
2.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연계 활동 사업
3.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4. 제6조의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

제10조(지원제외 대상) 지역생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
2. 그 밖에 각종 법령 위반으로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처분을 받은 업체 또는 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1조(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 설치)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정책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지역생산품 소비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호의 업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주요 생산 품목을 생산하고 구매·판매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
2. 전통시장, 마트, 외식업 대표 등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대표
3. 소상공인 기관·단체
4. 기타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람

제13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5조(회의)** ① 협의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군수는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예천군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지역생산품에 대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소비자들이 우선 구매 소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소비촉진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제5조)

- 지역생산품의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 방안
-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역생산품 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직거래 활성화 지원(제6조)

-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
-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포상
-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유관기관 및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다. 재정지원(제9조)

-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민간네트워크 연계 활동 사업
- 지역생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2월 24일

예 천 군 수

예천군 규칙 제1284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2조(「예천군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의 개정) 예천군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체차”를 “차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이나 자주 사용하는 쉬운 한자어로 바꾸어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언어생활 및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주요내용

○ 어려운 한자어 정비(정비대상 규칙 2건)

연번	규칙명	정비대상 용어	순화 용어	비 고
1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미연예	미리	제1조
2	예천군 탈세정보 교부금 지급 규칙	체차	차레로	제2조